

의안번호	2214790
의 퇴 인	우재준의원
회 답 일	2025.12.8.
추 계 번호	25B66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바목 신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업무상 사고 바. 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바목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사유

- 현행법령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업무상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함¹⁾

-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해당 업무를 고려할 때 해당 요인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
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업무상 사고의 증가 규모와 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지출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